

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「**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.

2014. 11. 12.

임실군의회 의장

1. 개정이유

근거법령인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9440호, 2009. 2. 6.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상위법에 상호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나.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변경(전문)
- 다. 용어의 정의 변경(안 제2조)
- 라.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4조 및 제5조)
- 마. 공간정보의 표준화, 설치 및 기능,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·자료유지 등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7조, 제8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
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- 2) 입법예고(2014. 9. 25 ~ 2014. 10. 15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결과 : 해당없음(비행정규제)
 - 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(붙임)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붙임
 - 6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리정보체계”를 “공간정보체계”로, “『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』”을 “『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』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공간정보”란 지상·지하·수상·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,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
2. “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”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.
3. “공간정보체계”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저장·조작·분석·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.
4. “공간정보 유통망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·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 다만,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.
5. “도로기반시설물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(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) 및 「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」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지리정보체계”를 “공간정보체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”을 “공간정보체계의 관리”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리정보체계”를 각각 “공간정보체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리정보체계”를 “공간정보체계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공간정보 표준화) 군수는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지리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”을 “공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·관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 1.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·관리 방안
 2.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
 3. 기타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지리정보체계”를 각각 “공간정보체계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 및 활용”을 “공간정보체계의 구축·

관리 및 활용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)”를 “(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리정보를 법 제10조”를 “공간정보를 법 제14조부터 제16조”로, “국가지리정보체계”를 “국가공간정보체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”를 각각 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토지종합정보망데이터베이스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데이터베이스 등 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『지적법』 제26조”를 “『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』 제86조”로, “제32조”를 “제83조”로, “지리정보자료”를 “공간정보자료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지리정보”를 각각 “공간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8조”를 “법 제25조”로,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군수는 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구축·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(정보의 내용, 특징, 정확도,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지리정보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유통망(지리정보의 생산자,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)”을 “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지리정보 제공)”을 “(공간정보 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27조”로, “지리정보”를 각각 “공간정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지리정보유통망”을 “공간정보유통망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리정보”를 각각 “공간정보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22조제2항”을 “제2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”를 “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”로, “지리정보”를 각각 “공간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리정보”를 “공간정보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간정보 제공 수수료(제21조제1항 관련)

종 류	금 액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치지도(1/1,000)벡터 데이터(Vector Data) 	<p>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</p>	<p>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력도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치지도(1/1,000) - 수치정사사진(1/1,000) 	<p>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</p>	<p>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</p>

※ 표이외의 축척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.

※ 1/5,000축척 미만의 도면은 1/5,000 축척 수수료를 적용한다.

[별표 2]

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21조제2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<p>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</p> <p>2. 우리군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,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.</p> <p>3. 기타 재해·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한 제공과 제공 자료의 가공결과를 군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100%
<p>4.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</p>	50%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 <u>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『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』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리정보”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도형 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를 말한다.</p> <p>2. “도형자료”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형 등이 있다.</p> <p>3. “속성자료”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과 조서 등이 있다.</p> <p>4. “지하시설물”이라 함은 상 ·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공간정보체계</u>----- 『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』(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“공간정보”란 <u>지상 · 지하 · 수상 ·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, 이와 관련된 공간적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”란 <u>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.</u></p> <p>3. “공간정보체계”란 <u>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· 저장 · 조작 · 분석 ·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· 소프트웨어 ·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.</u></p> <p>4. “공간정보 유통망”이란 <u>공간</u></p>

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, 난방,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.

5. “지리정보체계”라 함은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저장·조각·분석·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.

6. “총괄부서”라 함은 임실군 지리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7. “관리부서”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·구축·관리·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 및 읍·면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지리정보의 생산·구축·관리·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

제4조(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임실군 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

정보의 생산자·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 다만,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.

5. “도로기반시설물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(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) 및 「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」 제297조에 따른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.

6. -----
공간정보체계-----
-----.

7. ----- 공간정보

-----.

제3조(적용 범위) 공간정보-----

-----.

제2장 공간정보체계의 관리

<삭 제>

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
2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
3. 유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
4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
5.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
6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7. 기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수립 등) 군수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직 및 인력 등) ① 군수는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

<삭 제>

제6조(조직 및 인력 등) ① -----
공간정보체계-----

-----.

② ----- 공간정보체계-----

한다.

1. 지리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
의 양성

2. (생략)

제7조(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) 군수는 지리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, 프로그램,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장 지리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

제8조(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지리정보체계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공동구축 범위, 비용분담, 정보공유 등의 계획 협의
3.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매설·유지보수 등의 계획
4.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시책
5.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협의회 구성 및 임기) ①

1. 공간정보체계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간정보 표준화) 군수는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.

제3장 공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

제8조(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·관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간정보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·관리 방안
2.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
3. 기타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협의회 구성 및 임기) ①

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
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
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2. (생략)

3.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, 유관
기관 등에서 지리정보체계 관
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

4.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
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(생략)

제13조(간사) 협의회는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
간사는 지리정보 업무담당이 된
다.

제4장 지리정보체계의
구축·관리 및 활용

제15조(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
구축·관리) ① 군수는 수집·
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
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
계의 표준화 및 관계법령에 적
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
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유·관리하는 지리
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
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
고 새로운 지리정보데이터베이
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중복투
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(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공간정보체계

4. 공간정보체계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간사) -----

----- 공간정보 -----

제4장 공간정보체계의
구축·관리 및 활용

제15조(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
구축·관리) ① -----
----- 공간정보를 법 제14조부
터 제16조- 국가공간정보체계-

② ----- 공간
정보데이터베이스-----

----- 공간정보데이터베이
스-----

제16조(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

관리) ① 관리부서의 장은 토지 종합정보망데이터베이스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데이터베이스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『지적법』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지리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제2호의 규정 적용

② (생략)

제17조(보급 및 활용 등) ①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8조(목록의 작성 및 유통) ① 군수는 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(지리정보의 유형, 내용, 품질, 보안,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관리) ① ----- 공간 정보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『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』 제86조 -- 제83조 -----공간정보자료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보급 및 활용 등) ① -----
----- 공간정보-----
----- 공간정보-----

-----.

② ----- 법 제25조 -----

----- 공간정보-----

-----.

제18조(목록의 작성 및 유통) ① 군수는 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구축·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(정보의 내용, 특징, 정확도,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리정보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유통망(지리정보의 생산자,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)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9조(지리정보 제공)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 구축·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『임실군 지리정보 보안 관리규정』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이용자의 책무)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.

②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21조(수수료)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

② -----
-----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-----

-----.

제19조(공간정보 제공) ① -----
법 제27조-----
----- 공
간정보-----

----- 공간정보 -----

-----.

② ----- 공간정보-----

----- 공간정보유통망-----

-----.

제20조(이용자의 책무) ① 공간정보-----

-----.

② 공간정보-----

-----.

제21조(수수료) ① -----
----- 공간정보 -----
-----.

② -----

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.

③ (생략)

제22조(보안관리)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『임실군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』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---- 제23조제3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보안관리) ① -----
-----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-----
----- 공간정보-----
----- 공간정보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공간정보 -----
-----.

[별표1]

지리정보 제공 수수료(제21조제1항 관련)

종 류	금 액	비 고
지리정보 제공	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	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
출력도면 (장당)	1/1000이상 : 13,500원 1/2500이상 : 15,200원 1/5000이상 : 16,900원 1/5000미만 : 18,700원	도면규격 A1용지

※ 표 이외의 축척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간정보 제공 수수료(제21조제1항 관련)

※ 1/5000 축척 미만의 도면은 1/5000 축척 수수료를 적용한다.

종 류	금 액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 치 지 도 (1/1,000) 백터 데이터 (Vector Data) 	<p>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</p>	----- ----- ----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력도면 - 수치지도 (1/1,000) - 수치지정사사진(1/1,000) 	<p>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</p>	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

※-----
※-----

[별표 2]

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21조제2항 관련)

[별표 2]

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21조제2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. 우리군의 7대 지하시설물(상,하수도,전기,통신,가스,난방,송유관 등)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,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<u>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</u>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. 3. 기타 재해·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한 재공과 제공 자료의 가공결과를 군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100%
4.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	50%

【 별지 서식 】

감 면 대 상	감면율
1. ----- 2. ----- <u>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</u> ----- ----- <u>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</u> ----- 3. -----	100%
4. -----	50%

【 별지 서식 】

① 접수 번호	지리정보 제공 신청서		
② 성 명 (법인명)	③ 주민등록 번호(사업자 등록번호)		
④ 주 소			
⑤ 전 화 (이동전화)	()	⑥ 전자우편	
⑦ 지리정보종류	⑧ 사용용도		
⑨ 신청지역	⑩ 수 량		
⑪ 제공형태	종이출력 전산매체 ()	⑫ 수 수 료	원
<p>임실군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</p> <p>임실군수 귀하</p>			
⑬ 첨부서류			

※ 작성요령

- ⑦ 지리정보종류 : GIS관련 D/B, 수치지형도(1/1000, 1/2500, 1/5000) 등
- ⑧ 사 용 용 도 : 학술연구, 용역사업, 행정감사, 쟁송관련, 재산관련 등
- ⑨ 신 청 지 역 : 지번 또는 도엽번호(Index)를 표시
- ⑩ 수 량 : 신청 수량
- ⑪ 제 공 형 태 :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○를 표시하고 ()내 매체표시
- ⑫ 수 수 료 : 해당 금액 표시

① ---- ---	공간정보 제공 신청서		
② -----	③ ----- ----- -----		
④ -----			
⑤ -----	()	⑥ -----	
⑦ 공간정보--	⑧ -----		
⑨ -----	⑩ -----		
⑪ -----	⑫ -----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공간정보</u> ----- <u>공간정보체계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</p> <p>임실군수 귀하</p>			
⑬ -----			

※ 작성요령

- ⑦ 공간정보-- : -----

- ⑧ -----

- ⑨ -----
- ⑩ -----
- ⑪ -----

- ⑫ -----

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재정수반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세출세입의 추계비용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의 참석수당 정도로 연 50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조례안이므로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민원봉사과 한병해

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4A전북임실044			
정책명	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	
	부서명	민원봉사과		
	담당자명	주성현	전화번호	063-640-2284
주요 분석평가 내용 (민원봉사과)	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필요 없음	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등은 원안동의 ▪ 협의 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. 공간정보에 관한 이용은 재산권 행사나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. <p>제9조 협의회구성 및 임기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</p>			
검토의견 반영 결과 (민원봉사과)	<p>공간정보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로 그 객체가 되는 대상은 성별의 구분이 없어 성별적 고려의 대상이 아님. 또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는 이러한 공간정보의 운영 및 구축·관리 등의 공간정보체계(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)와 관련하여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.</p>			
2014년 10월 21일				
민원봉사과장				
분석평가책임관 귀하				

□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표준 등의 준수 의무)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·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.

제23조(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)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·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(정보의 내용, 특징, 정확도,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. 이하 "목록정보"라 한다)를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(공간정보의 활용 등)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7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과 제28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3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
2.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